

3.6 해외석학초빙에관한시행세칙

제 1조 (목적) 본 세칙은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의 국제협력 관련 사업 부문 중에서, 해외석학초빙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제수준의 학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간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수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진작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 본 세칙의 명칭은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 국제협력관련 사업부문 ‘해외석학초빙에관한시행세칙’으로 한다.

제 3조 (해외석학의 정의) 외국 국적의 학자로서 해당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부교수급 이상의 인물로서 초청과학자의 연구실적을 통해 판단한다.

제 4조 (지원내역)

- (1) 연간 1회 항공료와 체재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1인당 지원액은 별도로 정한다.
- (2)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5조 (구비서류)

- (1) (초빙신청) 연구단 소정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초청 시점 3개월 전 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(2) (결과보고) 활용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구단 소정 양식을 이용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초청 경비에 대한 지원금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.

(2007. 5. 17 제정)

해외석학 초빙 사업신청서

초빙교수명	성 명		소 속	
	전 화		E-mail	
신청교수	성 명			
	전 화		E-mail	
초청기간	2021년 월 일 ~ 2021년 월 일			
신청경비	* 항공료:			

상기와 같이 해외석학초빙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

1. 활용계획서 1부
2. 피초청자이력서(영문) 1부
3. 초청장 1부
4. 초청수락서 1부
5. 예상 경비산출내역 1부

2021년 월 일

신청교수 (인)

서울대학교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장 귀하

